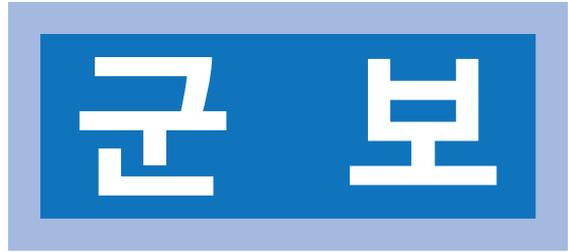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365호 2016. 12. 1(목)**

**조 례**

장수군조례 제2016-2195호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1
장수군조례 제2016-2196호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5
장수군조례 제2016-2197호 장수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9
장수군조례 제2016-2198호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13
장수군조례 제2016-2199호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 .....	23
장수군조례 제2016-2200호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28
장수군조례 제2016-2201호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입 법 예 고**

장수군입법예고 제2016-871호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42
장수군입법예고 제2016-878호 장수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3

**공 고**

장수군공고 제2016-853호 도로지정공고 .....	58
장수군공고 제2016-864호 도로지정공고 .....	59
장수군공고 제2016-868호 도로지정공고 .....	60

회 람								
--------	--	--	--	--	--	--	--	--



장수군 조례 제2195호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장 수 군 수



##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장수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회복지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
-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4. 경력관리 지원 사업
-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

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제1조)

나. 용어의 정의(제2조)

다. 적용범위(제3조)

라.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제4조)

마. 군수의 책무(제5조)

바. 실태조사(제6조)

사. 처우개선계획의 수립, 처우개선 등 사업(제7조 ~ 제8조)

아. 신분보장(제9조)

자. 포상(제10조)

장수군 조례 제2196호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장 수 군 수



### 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장수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장수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의무화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sup>3</sup>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

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중수도로 본다.

## 1. 제정이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제1조)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2조)

다.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제3조 및 제4조)

라. 하수처리수의 공급에 관한 사항(제5조)

마.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제6조)

장수군 조례 제2197호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장 수 군 수



## 장수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군수는 식의약용·사료용·화분매개용·천적용·환경정화용·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및 곤충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 및 곤충산업의 기반조성·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
4.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
5. 화분 매개 곤충의 산업화
6. 환경 정화 곤충의 산업화
7.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8.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와 시설의 설치 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제1조)

나. 용어의 정의(제2조)

다. 군수의 책무(제3조)

라. 전문인력의 양성(제4조)

마. 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제5조)

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제6조)

사.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제7조)

장수군 조례 제2198호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장 수 군 수



##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편의시설, 주차장관련시설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장수군 지역 내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새로이 시장구역으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 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향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향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허락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철거한다.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장수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3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0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4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3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수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7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8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상인회 등록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2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 시장에 제22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

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장수군 주차장 조례, 장수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

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 인정된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수군 전통시장·상권 활성화구역·상점가의 시설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장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 제5조)

나. 상권 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 제9조)

다.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 제12조)

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 ~ 제16조)

마.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 ~ 제21조)

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22조 ~ 제23조)

사. 시장·상권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23조 ~ 제29조)

1)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지도·감독,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장수군 조례 제2199호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장 수 군 수



###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초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장수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초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직접 고용한 장수군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장수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 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과장
-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장수군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제1조)

나. 용어의 정의(제2조)

다. 군수의 책무(제3조)

라. 적용범위(제4조)

마. 생활임금의 결정(제5조)

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제6조)

사.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 제10조)

장수군 조례 제2200호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장 수 군 수



## 장수군 대곡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주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대곡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곡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논개생가길 31-13 일원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전통한옥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관광지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그 이외의 금·토요일, 공휴일과 그 전일(前日)을 말한다.

제2장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군수는 관광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관광지 내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 2. 관광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 3. 관광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홍보
- 4. 관광지 이용자들에게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제4조(사용료 등) ① 관광지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성수기 및 주말의 숙박요금은 별표 1과 같다.
- ③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조제4호의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숙박시설 사용시 사용료의 30%할인(3일이상 숙박시설 사용시 40%)할 수 있다.
- ④ 관광패스라인 소지자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한다.
- ③ 반환 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

제6조(수입금 등의 처리) 관광지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만6세이하인 자 및 만65세이상인 자
4. 장애인 및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인
6. 관광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
7.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민주유공자의 활동보조인
9. 「공직선거법」 제2조,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한 자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독립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활동보조인
13.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수

군으로 되어 있는 자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다자녀 가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별칭사용) 관광지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구조변경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0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숙박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전염병 환자인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5.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자 책임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3장 위탁 운영

제12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체결)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수입조치, 예산지원액, 위탁기간, 시설의 관리책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지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 및 관광지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④ 관광지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하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⑤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양도금지) 수탁자 및 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관리권·운영권 및 사용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사무편람)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협약이행)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관광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보고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따른 군수의 지시를 위반 하였을 경우
2.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광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 기능을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대곡 관광지 사용료 기준(제4조 관련)

## 1. 숙박시설 사용료

건물명		면적 (㎡) 평수 (PY)	정원	객 실 수	사용료 (원)	비고
안 채	방1	42.8 (13)	7인~ 8인	1	150,000	1. 요금은 1일 사용시간 20시 간 기준 2. 입실 당일 15:00, 퇴실 익일 11:00 기준. 단 1일 사 용 시간인 20시간미만을 사용하더라도 1일 사용료 적용. 3. 추가 침구류 주문 시 1 세트 당 20,000원의 추가 요금 적용 4.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 료 - 12:00까지 10,000원(1 시간만 추가사용가능), 12:00이후 퇴실 시 1박 사용료 적용
	방2	37.1 (11)	3인~ 6인	2	130,000	
문간 채	37.1 (11)	3인~ 6인	4	130,000		
행랑 채	37.1 (11)	3인~ 6인	2	130,000		
사랑 채	22.8 (7)	2인~ 3인	12	80,000		
오 두 막 집	복 층	37.1 (11.0)	3인~ 6인	5	130,000	
	단 층	29.7 (9.0)	3인~ 4인	5	80,000	

① 관광패스라인 소지자 : 추가 5% 할인

##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원)	비 고
다목적실	대관	1시간	30,000	1. 1회 사용기준: 09:00시부터 1시간 단위 적용. 2. 숙박객은 사용료 50% 감면. 3. 대관은 음향, 영상시설 등 포함 4. 식당 조리기구 이용시 50,000원 추가

## 3. 도깨비전시관 입장료

(단위 : 원/1인)

구 분	일 반	청소년·군인	어 린 이	비 고
개 인	2,000	1,500	1,000	※단체20인이 상
단 체	1,500	1,000	700	

① 관광패스라인 소지자 : 20% 할인

## 【별표 2】

## 대곡 관광지 사용료 반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1. 제정이유**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주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대곡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및 제2조)
- 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 라.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제22조 및 제23조)

장수군 조례 제2201호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장 수 군 수



###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명”을 “10명”으  
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  
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  
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  
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나.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와 관련 현행 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제8호)

나. 관광객 유치 여행사의 지원기준을 완화함(제4조 제1호, 제2호)

다.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장수군 공고 제2016 - 871호

##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장 수 군 수



1. 조례명 :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장수군 작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유지와,
- 관내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위생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대상자의 범위,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호)
- 목욕탕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목욕탕 업주와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목욕비 청구 및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호)

####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 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주민복지실장)
- 2) 팩 스 : 063-350-2319
- 3) E-mail : pretty0810@korea.kr.
-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장수군 조례 제 호

###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수급자,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2. “노인”이란 「기초연금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초연금 수급가능 연령자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7조의 급여를 수급하는 자를 말한다.
5. “미취학아동”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만3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라 목욕비 지원을 받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매분기 첫 달 1일(이하 “지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4조(지원기준 등)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는 대상자가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 우대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할인금액”이라 한다)으로 목욕장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면장은 행정전산망 또는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준일 현재 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목욕 이용권을 면장에게 배부하고, 면장은 수령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목욕 이용권을 배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대상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목욕 이용권 배부대장에 자필서명 또는 지문날인을 받아 배부하고, 배부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목욕장 이용) ① 대상자는 목욕 이용권을 사용하여 할인금액을 지불하고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목욕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목욕 이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대상자는 목욕 이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목욕장 사업주는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목욕 이용권을 수령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군내의 목욕장 사업주와 목욕비, 할인금액의 책정 및 목욕 이용권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목욕비 청구 등) ① 목욕장 사업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급청구서와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 이용권 및 사업주 본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매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지급청구서를 접수하고, 매월 말일까지 제7조의 협약에 따라 할인된 목욕비를 목욕장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목욕장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장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20 년도 No.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 장수“

# 목욕 이용권



장 수 군 수 직인

60mm×90mm [보존용지(1종) 120g/㎡]

(뒤 면)

## 유의사항

- 본인 외 사용을 금합니다.
- 장수군 관내 목욕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앞면)

20 년도 No.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 장수”

# 목욕 이용권 (미취학아동용)



장수군수 직인

60mm×90mm [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뒤면)

## 유의사항

- 부모를 동반한 미취학아동 본인외 사용을 금합니다.
- 장수군 관내 목욕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

담당자	팀 장	실 장	결 재

읍면 별	일 자	구 분	수령량	지급량	이용권 연번호	잔 량	비 고
계							

[별지 제3호 서식]

목욕 이용권 배부대장

(○○읍면)

이용 권 번 호	성 명	전화번 호	주 소	지급 일	지급 량	수령자 (인)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 취약계층 목욕비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업 소 명				대표자	
사 업 명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사용매수		매	이용자수	명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p>『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b>장 수 군 수 귀하</b></p>					
첨부서류	1. 사용한 목욕 이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장수군 공고 제2016 - 878호

##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장 수 군 수



- 1.조례명 :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개정이유
  - 가. 법정전염병의 명칭이 법정감염병으로 변경
  - 나. 미성년자 연령이 만20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규정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23조제1항 중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변경
  - 나. 제23조제2항2호 “미성년 자녀(만 20세 미만)”을 “미성년 자녀”로

변경하여 연령 기준 상이에 따른 혼돈을 방지 하고자 함.

####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장수군보건의료원(의료지원과장)
- 2) 팩 스 : 063-350-3187
- 3) E-mail : [qhrjs105@korea.kr](mailto:qhrjs105@korea.kr)
-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자치법규-의견달기
-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 사항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전염병환자”를 “법정감염병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미성년 자녀(만 20세 미만)”를 “미성년 자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진료비·사용료·수수료 감면 및 지원 등) ①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u>법정 전염병환자</u>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사용료 및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p> <p>1. (생 략)</p> <p>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은 예산을 확보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외래 본인부담금)에 한한다.</p> <p>1. (생 략)</p> <p>2. <u>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 자녀(만 20세 미만)</u></p>	<p>제23조(진료비·사용료·수수료 감면 및 지원 등) ①----- ----- <u>법정감염병환자</u> ----- ----- ----- -----.</p> <p>1.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미성년 자</u>     <u>녀</u></p>

# 도 로 지 정 공 고

장수군공고 제 2016 - 853호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지정일자 : 2016년 11월 17일
- 지정내역

위 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이해 관계인	비고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1429-11	60.00m	3~6m	합계: 653m <sup>2</sup>	안태호	동의

2016년 11월 17일

장 수 군 수

## 도 로 지 정 공 고

장수군공고 제 2016 - 864호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지정일자 : 2016년 11월 22일
- 지정내역

위 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이해 관계인	비 고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667-1	4~8m	2~3m	10㎡	이미화	동 의

2016년 11월 22일

장 수 군 수

# 도 로 지 정 공 고

장수군공고 제 2016 - 868호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지정일자 : 2016년 11월 23일
- 지정내역

위 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이해관계인	비고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529-21	19.4m	3.0m	62.0m <sup>2</sup>	고은아	동의

2016년 11월 23일

장 수 군 수



##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